생활폐기물수집·운반
대 행 계 약 서

계약자 (서대문구) 서 대 문 구 청 장 문 석 진

(대행업체) 서울환경용역 (주) 대표 유 관 주

서부환경(주) 대표 최 진 호

(주)아이앤지환경 대표 최 승 호

서 대 문 구

(청소행정과)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"서대문구" 라고 한다)와 "서대문구" 로부터 허가 받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인 서울환경용역(주), 서부환경(주), (주)아이앤지환경(이하 "대행업체" 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(이하 "조례" 라 한다)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 적)

이 계약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·운반에 따른 권리·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에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"서대문구" 가 "대행업체" 에게 대행하게 한 구역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, "대행업체" 는 수거 후 청결한 뒷마무리까지 책임진다.

제 3 조 (대행구역)

"대행업체" 가 대행할 구역은『별표』와 같으며, 행정동 통폐합시에도 대행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.(별표1)

제 4 조 (대행기간)

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 연장대행 계약기간은 2015.1.1.부터 2016.12.31.까지로 한다.

다만, 서울시 · 서대문구의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제한 해제 및 종량제수수료 인상과 대행대가 지급방법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재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등으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.

② 제①항의 기간은 “서대문구” 과 “대행업체” 의 합의에 따라 연장 및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 5 조 (청소인력 및 장비)

①“대행업체” 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, 대행구역내의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“서대문구” 가 요구하는 별도의 인력,장비 및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②“대행업체” 는 차량의 대·폐차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“서대문구” 에게 사전 통보하고 대·폐차 즉시 차량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“대행업체” 는 차량 등 청소 관련 장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반입 중단 등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3일 이상 공휴일 또는 마포자원회수시설, 수도권매립지 휴무 등을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폐기물의 수집 · 운반)

①“대행업체” 는 대행구역내의 간·지선 도로상의 폐기물은 1일 1회 이상 수집· 운반하여야 하며, 기타 지역은 “서대문구” 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정일·정시 수거체제를 이행하여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(구 전체 폐기물의 장기간 반입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“서대문구” 의 지시에 따라 “대행업체” 는 신축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.)

②“대행업체” 는 상설「기동 순찰 반」을 편성하여 당일 미 수거된 폐기물이나 잔재 폐기물을 빠짐없이 수집·운반하여 항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폐기물 수집·운반과정에서 무단투기행위자 적발시에는 즉시 “서대문구” 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“대행업체” 가 무단투기 행위자를 통보하면 “서대문구” 는 관련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대행구역 내의 공공용봉투는 “대행업체” 가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
⑤“대행업체” 는 대행 지역내 “서대문구” 의 폐기물 수집·운반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최대한 신속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“대행업체” 는 대행구역내 “서대문구” 가 지정하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고 무단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
⑦“대행업체” 는 수집·운반한 폐기물을 반드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대문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한다.

제 7 조 (적 환 장)

①“대행업체” 는 폐기물의 수집·운반에 필요한 적환장을 운영하여야 한다. 단, 현재 사용 중인 적환장에 대하여 이전·폐쇄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“서대문구” 와 협의 후 “대행업체” 가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“대행업체” 는 “서대문구” 로 부터 적환장 개선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, 1일 1회 이상 소독 및 물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적환장의 악취 및 분진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있을시 “대행업체” 는 신속하게 부대시설인 칸막이, 담장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“대행업체” 는 년 1회이상 적환장 계근대의 정기검사를 필하고 검사결과서를 “서대문구” 에 제출하여야 한다

제 8 조 (사무소 및 차고 소재지)

"대행업체"는 대행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무소 및 차고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"서대문구"와 사전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수수료)

① 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"대행업체"는 서대문구 관내 가정(영업점 제외)에서 배출한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제 10 조 (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복지)

① "대행업체"는 소속 미화원에게 "서대문구"의 환경미화원 수준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복지증진에 힘써야 한다.

② "대행업체"는 매년 근로자(운전원, 환경미화원)의 임금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인상하여야 한다

③ "대행업체"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반드시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매년 작업복(하절기 1벌, 동절기 1벌 이상)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대민봉사)

① "대행업체"는 폐기물의 수집·운반이 구민 후생 및 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대행구역내의 모든 구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하며, 소속 종사원에 대한 정기·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"대행업체"의 대표자는 대행구역내의 폐기물 수집·운반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 확인·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여야 한다.

③ "대행업체"는 종사원이 주민에게 수고비 등 금품을 요구하거나, 불친절한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④ 부조리 행위를 한 "대행업체" 소속 종사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의 징계처분기준에 의거 처벌하고 즉시 "서대문구"에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)

① "대행업체"는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"서대문구"는 "대행업체"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시 악취 발생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"대행업체"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작업 시에는 악취, 오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"대행업체"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의무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 후 수집·운반하고 전용 용기는 "대행업체" 책임하에 철저히 보급하여야 한다.

④ "대행업체"는 "서대문구"가 지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는 용도 외에 사용을 할 수 없고, 중간집하장소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 용기는 "대행업체"의 관리하에 월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여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.

⑥ "대행업체"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업체의 업무협조)

"대행업체"는 폐기물 수집·운반 등과 관련하여 "서대문구"의 지시사항 및 업무요청 사항에 대하여 "대행업체"는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업체의 지도감독)

"서대문구" 는 대행지역내의 폐기물 수집·운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고, 필요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"대행업체"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대행계약 해지 및 구역변경)

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구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.

1. "서대문구" 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"대행업체" 가 불응하였을 때.
2. 제5조에서 정한 청소인력·장비 및 차고지등을 확보하지 못한 때.
3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(제21조, 제22조)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.
4. "대행업체" 의 해지신청이 있고 "서대문구" 가 정당하다고 인정 하였을 때.
5. 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
6. 기타 폐기물 관계법령 및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.

② "대행업체" 는 계약 기간 중 해지하고자 할 때는 "서대문구" 가 담당 구역 인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(단,3개월은 초과 할 수 없다)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협력지원체계 확립)

① "대행업체" 는 지정된 대행 구역 외 다른 지역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서울특별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"서대문구" 의 요구시 즉시 인력·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"대행업체" 는 재해 발생 및 업체의 부도 등 긴급 상황 발생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『**폐기물처리 협력지원 계획서**』를 "서대문구" 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채권확보 및 폐기물 방치시 비용부담)

① "대행업체" 의 영업정지 또는 폐업사유 발생시 "대행업체" 의 대행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치 폐기물을 "서대문구" 가 수집·운반하거나 타 업체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할 경우 모든 비용은 "대행업체" 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"대행업체" 의 폐기물 수집·운반 실태가 불량하고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"서대문구" 가 수집·운반토록 지시한 경우 "대행업체" 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, "대행업체" 가 이에 불응하여 "서대문구" 가 당해 폐기물을 수집·운반 할 경우 "대행업체" 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"서대문구" 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위 1항 및 2항에 따른 비용은 종량제 규격봉투인 경우 봉투 판매소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하고, 기타 폐기물은 그 부피 등을 감안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.

제 18 조 (책임한계)

① "대행업체" 는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"서대문구" 에 전가할 수 없다.

제 19 조 (보 칙)
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와 대행업체 준수지침을 준용한다.

② 본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"서대문구" 와 "대행업체" 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"서대문구" 의 해석에 따르고, 본 계약 이외의 사항은 "서대문구" 와 "대행업체" 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
제 20 조 (계약서의 보관)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“대행업체” 와 “서대문구” 가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4년 12월 일

계약자 (서대문구) 서 대 문 구 청 장 문 석 진 (인)

(대행업체) 서울환경용역(주) 대표 유 관 주 (인)

서부환경(주) 대표 최 진 호 (인)

(주)아이앤지환경 대표 최 승 호 (인)

【별표1】

업체별 청소대행구역 현황

업 체 명	대 행 구 역 (생활폐기물)
계	14개동
서울환경용역(주)	충현동, 천연동(현저동 제외), 북아현동, 신촌동,
서부환경(주)	홍은1동, 홍은2동, 남가좌1동, 남가좌2동, 북가좌1동, 북가좌2동
(주)아이앤지환경	현저동, 연희동, 홍제1동, 홍제2동, 홍제3동